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 현장 점거농성 돌입

“양진석 회장, 민주노조 그만 죽여라” ...

노조 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냉난방·환풍기 설치 등 요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3월 16일 공장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노조 호원지회는 현장 농성투쟁 돌입하며 “인간답게, 욕먹지 않고, 깨끗한 현장에서,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1년 2개월 동안 투쟁했다” 라고 밝혔다.

지회는 “사측은 민주노조를 압살하기 위해 문자를 보내고, 집에 찾아오고, 어용노조 가입을 협박했다. 그것도 모자라 조·반장과 관리자가 팀을 만들어 부서별로 돌며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라고 폭로했다.

지회는 “사측이 몇 초 만에 만드는 경고장, 하루 만에 보내는 강제전환배치, 일주일 만에 저지르는 해고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사는 민주노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견뎠다” 라고 털어놨다.

지회는 “민주노조를 만들고 스스로 권리를 찾는 법을 배웠고, 노동자가 없으면 기계가 멈춘다는 사실을 알았고, 회사 이윤은 노동자 없이 불가능하다는 원리를 깨달았

고,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진리를 깨우쳤다” 라고 선언했다.

지회는 “민주노조가 사라지면 현장의 희망도 사라진다” 라면서 “회사가 만든 노조는 노동자의 편이 될 수 없다. 민주노조가 사라지면 사측의 거짓이 순식간에 드러날 것이다” 라며, 금속노조와 함께하지 못하는 동료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지회는 “우리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3월 16일 현장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어떻게 싸워야 승리하는지 알았다” 라며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 단결하고 끝까지 투쟁하면 양진석 회장과 사측은 결국 손을 들 것이다” 라고 결의를 천명했다.

지회는 ▲노조 활동 관련 부당해고·징계 철회 ▲해고·징계 기간 임금·수당 지급 ▲노조탈퇴 종용 중단 ▲노조활동 개입 중단 선언 ▲부당노동행위자 문책·직위해제 ▲조합원 인사·업무상 불이익·차별대우 금지 ▲사내 자유 노조 활동 보장 ▲사내 노조 사무실 제공

▲노조 전임자, 간부, 조합원 노조 활동시간 보장 ▲상급단체 간부 노조활동 사내 출입 보장(사전 통보) ▲노조 활동 제약 임단협 재협약 ▲작업 위험요소 개선 TFT 구성·개선 ▲냉난방기 설치 ▲환풍기 설치 ▲과도한 방청류 사용 금지 ▲노조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노동고용청은 3월 초 호원 임·직원 아홉 명을 어용노조를 만들어 금속노조 호원지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광주지방검찰청에 넘겼다.

반면, 노조 호원지회가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 탄압을 당하는 동안 사법기관과 관청은 지회를 철저히 고립시키며 노조파괴에 동참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어용 가짜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인정하고, 법원은 압수수색을 세 번이나 기각했다. 광산구청은 150명 어용노조의 9명짜리 총회를 인정하고, 광주광역시는 호원을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으로 뽑아주고, 세금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측을 지원해줬다.

대양판지, 어용노조 설립 취소당하자 또 기업노조 세워

노동부, 금속노조 교섭권은 모르쇠 ... “사측 복수노조 악용, 창구단일화 폐지해야”

고용노동부가 설립 총회를 열지 않은 대양판지 기업노조의 설립신고를 취소했다.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수사 과정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를 직권 취소한 첫 사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4일 대양판지주식회사노동조합(아래 대양판지기업노조)에 설립신고수리처분을 직권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대양판지기업노조는 2020년 3월 23일 설립 총회를 열었다고 노조 설립신고서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양판지기업노조는 설립 총회 개최 사실이 없다.

지난해 3월 대양판지 사측은 청주공장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가입을 준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급하게 기업노조를 띄웠다. 사측 지시에 따라 대양판지기업노조는 설립 총회조차 하지 않고 허둥지둥 설립신고를 마쳤다. 설립 총회를 연 것처럼 총회 회의록을 노조 설립신고서에 붙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3조(설립의 신고)와 16조(총회 의결사항) 위반이다.

기업노조가 갑자기 튀어나온 2020년 3월 대양판지 청주공장, 같은 해 5월 장성공장에 금속노조 지회가 생겼다. 두 지회는 금속노조 가입 직후부터 사측과 기업노조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며 이들을 노동부에 고소했다.

검찰과 노동부는 지난해 6월 대



양판지 본사와 장성·청주공장을 압수 수색했다. 사측 지배개입과 노조 설립 총회 미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대양판지 임원들을 노조법 상 부당노동행위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속노조는 3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양판지 교섭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양판지 사측을 규탄하고, 복수노조 악용에 대한 노동부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양판지 사측이 사기극을 벌여 기업노조에 만들어준 교섭대표노조 자격은 처음부터 금속노조 것이었다. 지난해 대양판지 기업노조와 맺은 단체협약도 당연히 무효”라며 “사측은 이제라도 금속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기창 노조 부위원장은 “기존 대양판지기업노조가 설립 취소 통보를 받자 바로 사측은 노조 이름

만 바꿔 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를 다시 세웠다”라며 “검찰에 송치되고도 불법을 계속 피하고 있다. 검찰은 대양판지 사용자와 기업노조 간부들을 즉각 구속기소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노동부 역할 미흡 문제도 제기됐다. 윤상한 노조 광주전남지부 대양판지지회장은 노동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대양판지 사측이 금속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교섭에 임하라는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금속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한다는 노동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광주노동청은 대양판지 사측이 현재 저지르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도 모른 척하고 있다. 사측이 2020년 행태를 반복해 또 기업노조를 세웠지만, 노동부는 수수방관이다.

윤상한 지회장은 사측의 복수노조 악용에 대한 노동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지회

장은 “교섭대표노조 자격 관련해 노동부가 나서지 않는 것도 큰일이지만, 대양판지 장성공장장이 반장 회의에서 한국노총이 교섭권을 가져갈 거라며 대놓고 떠드는데도 노동부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함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은미 의원은 “사측이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좌지우지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폐지가 답” 이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문제점이 대양판지 사례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창구단일화제도는 사측이 노조의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고 복수노조를 악용할 수 있는 권한만 보장할 뿐” 이라며 “국회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를 위해 힘쓰겠다” 라고 약속했다.

“현대제철 불법파견 범죄 특별근로감독 하라”

노조 충남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원청 범죄 엄중 처벌 촉구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고용노동부에 원청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회는 3월 17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현대제철 심각한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을 열고,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에서 벌이는 불법행위와 노동 형태에 관해 설명했다.

지회는 “당진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비, 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 운송 등의 작업을 한다” 라면서 “현대제철은 정비는 맥시모 프로그램, 조업은 MES 시스템, 크레인 운전은 차상국 프로그램, 구내 운송은 PDA를 이용해 구속력 있는 지시, 지휘를 한다” 라고 밝혔다.

지회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대제철을 위해 노동하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라고 지적

했다.

지회는 “당진제철소 대부분 공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 1항이 파견금지 대상으로 정한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이다” 라면서 “당진제철소에 있는 모든 사내하청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라고 폭로했다.

지회는 도급업체로 위장한 43개 사내하청업체에서 6,5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전체 공정은 철강 생산과 납품 계획에 따라 각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작업하는 ‘연속흐름 공정’ 의 특성이 있다” 라며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종류, 작업속도, 작업시간, 작업방법, 작업계획 등을 각 공정별로 분리해 작업할 수 없다” 라고 설명했다.

사법부는 철강업종 불법파견에 관한 여러 판결에서 ‘제철소 특

성상 원청과 하청업체의 관계는 유기적인 협업-분업관계’ 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회는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이 지난 2월 10일 내린 4개 업체-7개 공정 749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환영한다” 라면서 “하지만 4개 공정에 대한 적법도급 판정은 유감이다” 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벌인 5개 업체-11개 공정 근로감독 당시 현대제철이 설비정지, 입고 중단 등으로 현장을 통제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게 방해해 4개 공정이 적법 판정이 났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모든 공정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시행 ▲적법 도급 판정한 4개 공정 특별근로감독 재시행 ▲현대제철 불법파견 범죄 사죄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직접 고용 등을 요구했다.